

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퇴직금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2년 11월 3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8 호

군포도시공사 퇴직금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퇴직금의 지급제한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/2를 줄여 지급한다.

1. 재직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, 제63조의7,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/2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

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/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이 태 권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심 영 주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퇴직금의 지급제한)	<p>제7조(퇴직금의 지급제한)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/2를 줄여 지급한다.</p> <p>1. 재직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</p>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, 제63조의7,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/2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금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/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

-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-453호
「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」(2022. 5. 30.)

2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

- 금품·향응 수수, 성폭력, 성매매,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전액 지급은 국민 기대 수준에 미흡
 -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퇴직금의 일부(3)을 삭감하는 규정을 관련 지침 및 내부규정에 명시
- ↳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
 -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·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(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)
 -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